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36,620,304	238,098,609
일반회계		7,110,478,272	213,314,348
특별회계		826,142,032	24,784,261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826,142,032	24,784,26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특별회계	4,221,000	126,63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8,597,989	1,457,9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6,505,564	14,295,16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429,228	162,87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089,717	92,692
	소방특별회계	288,172,534	8,645,176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126,000	3,78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 명시이월사업확정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3,959,39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차입 한도액은 74,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